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663
----------	------

제출년월일 : 2015. 6. 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의 일환인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용이란 민간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말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한 안산시 관내·관외의 모든 산후조리원을 말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등록된 안산시 관내·관외의 모든 제공기관을 말함.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자는 분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기구 월평균소득 오십퍼센트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함. (안 제3조)

다.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 (안 제4조)

라. 신청인이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안 제5조)

마. 대상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의뢰서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함. (안 제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모자보건법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

□ 예산수반사항 : 붙임(비용추계서)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4. 30. ~ 5. 20.(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권고사항 반영하여 조문정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및 검토 결과

개선 권고부서	제출 방법	평가대상 조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결과 및 반영여부
안산시 (감사관)	문서	제5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지원 대상자 <u>증빙 서류를</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빙서류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신청서 등에 제출서류 기재필요	반영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증빙서류 기재
	문서	제8조(비용지급)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그 비용을 해당 청구인에게 <u>지급하여야 한다.</u>	○ 제8조(비용지급)에서 산후조리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해야 한다.”를 “지급한다.”로 규정	반영 “지급한다.”로 수정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 이란 민간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민간 산후조리원” 이란 개인 혹은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영업 중인 안산시 관내·관외의 모든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란 보건복지부 지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등록된 안산시 관내·관외의 모든 제공기관을 말한다.
5. “신청인” 이란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분만 예정일 3개월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금액 오십퍼센트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한다.

②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의뢰서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비용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①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관외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은 대상자의 서비스 종료 후 다음달 5일 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관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을 이용한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0 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급)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그 비용을 해당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규정)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보건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모자건강담당 신애경
	담당자 성명·전화	김화영 (행정 5977)

[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산모 생년월일	
		출산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명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산모수첩(출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의뢰서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산모	생년월일
		출산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위와 같이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보건소장

※ 의뢰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뢰서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산모 생년월일	
		출산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보건소장

※ 의뢰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청구서

청구금액	금 원		
청구내역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간 중 의 <u>명</u> 의 서비스 비용(명단별첨)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비용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직인)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서비스 이용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1부.
- 통장사본 1부.
-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의뢰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지원 청구서

청구금액	금 원				
이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간 중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기관 영수증 첨부)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기관명				출산일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영수증(원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청구서

청구금액	금 원		
청구내역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간 중 의 명의 서비스 비용(명단별첨)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직인)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서비스 이용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1부.
- 통장사본 1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뢰서 1부.
- 서비스 가록지 1부.

[별지 제8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 청구서

청구금액	금 원					
이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간 중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비(기관 영수증 첨부)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기관명				출산일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기관 발행 영수증(원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 서비스 이용자 명단 】

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일	서비스 이용기간	청구액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663
------------	------

제안년월일 : 2015년 7월 8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조항 간 상호 불 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 기간을 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5조의 “분만”을 “출산”으로 용어에 대하여 통일하고, 지원 신청기간을 실정에 맞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하고, 관내 산후조리원 퇴소 후 신청자에 대한 청구내용을 수정함.
- 별지 서식에 대한 제목을 일관성 있게 수정함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분만”을 “출산”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를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2항 중 “대상자”를 “대상자 또는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지원 신청한 자”로 수정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비용 지원 신청서”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지원대상자)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u>분만</u> 예정일 3개월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금액 오십퍼센트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u>출산</u> 예정일 3개월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금액 오십퍼센트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u>분만</u> 예정일 40일 전부터 <u>출산일까지</u>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u>출산</u> 예정일 40일 전부터 <u>출산 후 30일 이내</u>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① 생략 ② 관외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u>대상자는</u>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① 생략 ② 관외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u>대상자 또는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지원 신청한 자는</u>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민간 산후조리원 지원 신청서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산 모	
		출산일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민간 산후조리원명					
위와 같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산모수첩(출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산 모	
		출산일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민간 산후조리원명					
위와 같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산모수첩(출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산 모	
		출산일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명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산모수첩(출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산 모	
		출산일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명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산모수첩(출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